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지원하는 보호비용의
범위 등에 대한 자치입법권 확대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9118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지원하는 보호비용의 범위 등에 대한 자치입법권 확대	2

I .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 출 일 : 2025. 3. 19.
3. 회 부 일 : 2025.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와 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지원하는 보호비용의 범위 등에
대한 자치입법권 확대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에 입소한 성폭력피해자나 가족구성원(이하 “성폭력피해자등”이라 함)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와 그 지원 방법 및 절차¹⁾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으로 정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는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각각 정하라는 취지임.

현행	개정안
4.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비용	4. ----- <u>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u>여성가족부령으로</u> 정한다.	② ----- ----- <u>여성가족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

현행법 제12조²⁾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바, 2025년 7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35개소가 운영중임.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2025. 7. 기준) >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35	2	3	1	2	3	2	1	-	4	1	3	1	2	2	2	3	3

자료: 여성가족부

그리고 현행법 제14조³⁾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시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설에 입소한 성폭력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나 성폭력피해자에게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서는 보호비용으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를 규정하면서 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비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⁴⁾은 그 밖의 비용으로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법제처가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하여 추진 중인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의 일환으로서, 보호시설에 입소한 성폭력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을 조례로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⁵⁾,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보호시설에 보호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말한다.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⁶⁾,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비용에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⁷⁾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호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보호비용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규율영역의 확보를 위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충청북도는 보호비용의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등 성폭력피해자 보호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7)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생계비와 아동교육지원비는 국가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30%~50%(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밖의 지역 70%)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음.

※ 아동양육비는 보호시설의 특성상 수요가 없어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함.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 초래로 보호비용 범위와 지원방법 및 절차가 상이하여 피해자 지원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성인지 감수성에 편차가 있으므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지역별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650